

• 소통의 연수 • 통합의 연수 • 안전한 연수



연수구보



발행 · 편집인: 연수구청장 / 발행처: 인천광역시 연수구 /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우)21967 ☎ 749-7392 / FAX 749-7399

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부록 제1433호 2024. 3. 11.(월)

【공 고】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415호(인천광역시 연수구 내 · 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 (안) 입법예고) 1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426호(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6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429호(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8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436호(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10

【고 시】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4-21호(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12

회							
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4-415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4. 3. 5.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자치법규명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외국인정책 시행 필요성 대두에 따라 내·외국인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 정책의 추진 근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용어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 종합계획의 수립 및 사회통합 시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제5조)
- 실무협의체 구성 및 사회통합 서포터즈 운영 (안 제6조~제8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25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2층 자치행정과 (동춘동, 연수구청)

○ 연락처 : 전화 032-749-7233, FAX 032-749-7219

○ E-mail : jhcool77@korea.kr

라. 제출서식

제 정 (안)	사 유(구체적으로)
	(필요시 관련 근거자료 첨부)

※ 이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홈페이지(<http://www.yeons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5. 첨부 :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

【첨부】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외국인 사회통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내·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추진을 통해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발전하는 지역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주민”이란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구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고 거주하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3. “사회통합”이란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소통하며 살아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상생을 위해 사회통합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내·외국인 사회통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통합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거주 현황에 관한 사항
3.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 간 사회통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사회통합 시책추진과 관련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통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회통합 시책) 사회통합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 발굴
2. 구 외국인정책 모니터링 및 부서 간 협의 수행
3. 사회통합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
4.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상급기관 건의
5. 그 밖에 사회통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무협의체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통합과 관련한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 사회통합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체는 사회통합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와 현안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의 담당 및 담당자로 구성한다.

③ 주무부서는 소관부서에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한 업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소관부서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통합 서포터즈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통합 정책의 홍보와 내·외국인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독려를 위한 사회통합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내국인주민과 외국인주민의 상생을 위한 사회통합 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한다.

③ 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회통합 정책 홍보
2. 사회통합 정책과 관련한 외국인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3. 사회통합을 위한 캠페인 또는 행사 참여
4. 그 밖에 사회통합 정책의 홍보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구청장은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서포터즈 해촉)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다른 시·군·구 등으로 전출한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장기해외체류 등으로 서포터즈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서포터즈의 활동사항이 미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발생시켜 서포터즈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서포터즈의 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시지정문화재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권21,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61」 보수정비사업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예비후보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전문성 있는 후보자의 많은 참여 및 지원 바랍니다.

2024. 3. 8.

연수구청장

I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4. 3. 8.(금) ~ 3. 17.(일)
- 모집인원 : 예비위원 21명 (평가위원 수의 3배수)
- 모집분야 : 문화재보존학, 미술사학, 문화재학 등 문화재 관련 분야
※ 신청서 “전문분야” 란에 위 모집 분야 중 1개 필히 명기
- 응모자격
 -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타 지자체 공무원
 - 정부투자기관, 출연기관, 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자
 -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문화재수리기능자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자격제외자
 - 당해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 당해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서 접수 후라도 입찰참가 등록 업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예비명단에서 제외
- 예비위원 신청 및 접수

- 가. 접수기간 : 2024. 3. 8.(금) ~ 3. 17.(일) 18시까지
- 나. 접수장소 : 연수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진흥팀 (☎ 032-749-7303)
- 다. 접수방법 : 공문(비공개로 발송), 전자우편 ※ 일반우편 및 팩스 불가
- 공문 수신처 : 연수구 문화관광과
 - 전자우편 : moonkove99@korea.kr (원본스캔본 PDF파일 1부로 병합하여 첨부)
- ※ 2024. 3. 18.(월)에 예비위원 접수확인 문자 보낼 예정, 반드시 접수유무 확인 바람
- 라. 제출서류 (자격 증빙서류 등)
-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 (서식1)
 - 보안각서 및 개인정보 처리 수집 이용 동의서 각 1부 (서식 2, 서식3)
 -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자격요건 확인 필요 서류
- ※ 타 기관 제안서 평가위원 경력 증빙자료 제출 사절

II 평가위원 선정 및 개최

1. 평가위원 선정 : 2024. 4. 2.(화) (예정)
2. 선정인원 : 9명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후보 2명 추가 선정)
3. 선정방법
 - 가. 입찰참가업체가 추천하여 선정
 - 나. 선정순서 ① 다빈도 ② 고령자 순서로 최종 선정
 - 다. 선정결과 알림 : 선정된 위원에게 유선으로 개별통지(명단 비공개)
 - ※ 선정 위원과 연락 두절 또는 불참 통보를 받은 경우 차순위 선정
4. 제안서 평가일시 : 2024. 4. 12.(금) 14:00 연수구청 본관 6층 더 공감
 - ※ 평가일시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지
5. 기타사항
 - 가. 제안서 평가위원 위촉 및 해촉 기준 :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촉된 것으로 보며, 제안서 심사 완료 시 해촉으로 봄.
 -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다. 후보자 등록 신청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보안 엄수 요망
 - 라. 참석위원에게는 연수구 수당 지급기준에 의거 참석수당 지급
 - 마.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청 문화관광과 문화진흥팀 【담당자 : 도문숙 (☎ 032-749-7303)】으로 문의 바람.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의 규정에 따라 소유자의 요청으로 운행정지명령한 자동차에 대하여 동법 제24조의2제3항제4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운행정지명령 내역을 공고합니다.

2024년 03월 07일

연수구청장

1. 공고명칭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2. 공고기간 : 2024. 03 07 ~ 2024. 03. 31(31일간)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소유자	차 명	운행정지 요청일자	사 용 본 거 지	운행정지 사 유
149다6656	비**	Lincoln Aviator 3.0	2024.02.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238가5939	비**	BMW X6 xDrive30d	2024.02.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08고9388	비**	BMW X5 xDrive40d	2024.02.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14오5554	비**	BMW X5 xDrive45e iPerformance	2024.02.0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89서1879	이**	INFINITI G35S	2024.02.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8다4787	남**	G80	2024.02.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86더7213	공**	E220 d 4Matic	2024.02.13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26서1793	비**	BMW Gran Turismo EfficientDynamics Edition	2024.02.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85저7713	비**	BMW X6 xDrive30d	2024.02.15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87머0723	구**	포터 II (PORTER II)	2024.02.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91라9075	강**	포터 II 웬바디 (PORTER II)	2024.02.1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53무9638	비**	A6 45 TFSI	2024.02.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03우9321	비**	BMW 530i	2024.02.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66러8528	비**	BMW 730d xDrive	2024.02.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30가6567	비**	BMW 730d xDrive	2024.02.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32버5984	비**	BMW 320d xDrive Gran	2024.02.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Turismo			
161노6187	비**	BMW X2 M35i	2024.02.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293노2617	비**	Mercedes-Benz CLS300 d	2024.02.2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인천73고3247	김**	카니발	2024.02.21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146오3947	비**	MINI Cooper five-door	2024.02.26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유자 요청

4.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때 동법 제81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자는 동법 제82조(벌칙)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직권 말소 가능하고 무등록 자동차 운행 시 동법 제80조(벌칙)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차량민원과 차량등록팀(☎ 032-749-8801)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수용재결 신청서류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11-33호(2011. 9. 19.)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되고, 같은 고시 제2019-156호(2019. 12. 9.), 제2022-64호(2022. 9. 29.)로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고시 된 옥련대진빌라주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 내 편입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8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1. 사 업 명 :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5.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4. 3. 8. ~ 2024. 3. 25.
6. 열람장소 및 방법 : 연수구청 주택과 방문 또는 전화(☎032-749-8627)
7. 열람서류 : 별첨 「수용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참조
8. 기 타 : 관계서류는 연수구청 주택과(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9. 수용재결 신청대상

◎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면적 (㎡)	지분	소유자		비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1	옥련동	286-4	대	366	2*7*/3*5*0	대**설 주식회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7*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1번지 일원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및 제8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4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 정비사업 종류 및 명칭 :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정비사업 시행구역의 위치 및 명칭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118-1번지 일대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정영린)
나.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186번길 21, 306호
- 준공인가의 내역
가. 사업시행계획

건 축 시 설	부지의 명 칭	송학동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지면적	6,809.00㎡			주 용 도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면적	1,103.362㎡		건축연면적	24,785.026㎡			지하면적	7,766.292㎡	
	건폐율	16.204%		용적률	249.945%			최고높이	83.60m	
	층수	지하 2층 / 지상 29층		주차장	215대 / 5,975.494㎡					
주 택	공 급 구 분	동수	세대수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21㎡	39㎡	43㎡	52㎡	59㎡	84㎡	97㎡
	계	4	215	—	—	—	—	215	—	—
	분 양	4	215	—	—	—	—	215	—	—
	임 대	—	—	—	—	—	—	—	—	—

- 다른 법률의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1항에 해당되는 사항
- 설계도서 및 기타
-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관계서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택과 (☎749-8627)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